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7,066,655	11,612,000
일반회계		370,188,789	11,105,664
특별회계		16,877,866	506,336
기타특별회계		16,877,866	506,3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7,342	20,620
	주차장 특별회계	10,347,677	310,43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99,906	23,997
	기반시설 특별회계	9,594	288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51,558	25,547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81,918	8,458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3,899,871	116,99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821,794천원(일반예비비:3,701,887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18,119,90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